

파주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2. 4. 15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파주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있어 주민공개 대상에 당해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- 주민공개대상에 “당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서” 추가
(안 제3조제1항)

파주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제3호 내지 제8호”를 “제4호 내지 제9호”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당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 획 실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실장 이 춘 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산담당 안 배 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 예 자(406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주민공개대상) ①(생략)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3. ~ 8. (생략)</u>	제3조(주민공개대상) ①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당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</u> <u>세입·세출예산서</u> <u>4. ~ 9. (현행 3. ~ 8.과 같음)</u>

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있어 주민공개 대상에 당해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주민공개대상에 당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추가함,
(안 제3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지방재정법

제118조의3 (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 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,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대상에 당해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함은 물론 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